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8. 10.(수) 16:30<br>2022. 8. 11.(목) 조간 | 배포 일시 | 2022. 8. 10.(수) 16: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| 고용정책실<br>고용서비스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  | 과 장 이민재 (044-202-7327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신지원 (044-202-7393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사무관 이계승 (044-202-7333)<br>주무관 김학현 (044-202-7336) |

##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「직업안정법」 시행령 개정 추진

- 청년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관 협력관계 구축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8월 10일 16:30, 서울역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\*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.

\* (주)사람인에이치알, 잡코리아(알바몬), (주)인크루트, (주)커리어넷, (주)미디어윌네트웍스(알바천국), (주)미디어윌(벼룩시장), (주)브레인커머스(잡플래닛)

○ 이날 간담회는 그간 고용노동부·대검찰청 간 청년 구직자 등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,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리로,

- 정부와 사업계가 함께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민관협업 대책을 논의하고,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### 주요 기업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노력

#### ○ 사람인에이치알:

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명원·공동인증서를 통해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, 불량기업 퇴출을 위한 즉시 퇴출제(One Strike Out)를 시행하고 있으며, 별도 인력을 채용하여 기업회원 전수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, 사이버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주요 배너에 홍보를 강화하고, 공지사항 최상단에 '구직자 주의사항'도 안내(초기화면 고정)

#### ○ 잡코리아:

신규가입 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하는 등 기업인증을 강화하는 한편, 전체 구인공고를 대상으로 자동/수동 여과를 진행하여 구인광고를 관리해 나갈 계획  
초기화면 상단 배너, 공지사항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구직자 피해를 예방

## 1. 제도개선을 위한 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

- 먼저, 고용노동부는 사업체의 구인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유도하고,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·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.
- 고용노동부에 따르면, 그간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·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.
- 이에,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### 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제28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) 개정(안)

7.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<신설>

#### [참고사항]

- 제28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)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구인자의 업체명(또는 성명)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
- 2.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·구직의 광고에는 구인·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
- 3.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“(무료)취업상담”·“취업추천”·“취업지원”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- 4.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
- 5.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
- 6.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

- 그간 업계에서도 청년층이 온라인 구인·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,
- 직업정보 제공기관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, 우리 청년들이 거짓 구인 광고로 인한 범죄 연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.
- 이번 간담회는 기업별 구인광고 관리 강화 계획 등을 공유하며 청년 구직자 등의 범죄 연루 예방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,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## 2. 구직자 보호 강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

- 이와 더불어, 성장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이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 사업체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,
  -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법적·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, 사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도 마련했다.
-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,
  - “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이스 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”임을 강조하면서,
  - “이번 간담회는 직업정보제공사업체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, 고용노동부는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”이라며,
    - “관련 업계에서도 구직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꾸준히 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**추진 배경**

-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민·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,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·연계 방안 논의

□ **간담회 개요**

- (일시/장소) '22.8.10.(수) 16:30 /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2층(1202호)

- (참석) ▲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, 고용서비스정책과장  
▲ 산업계 직업정보제공사업자

\* (산업계) (주)사람인에이치알, 잡코리아(알바몬), (주)인크루트, (주)커리어넷, (주)미디어윌 네트워크(알바천국), (주)미디어윌 (벼룩시장), (주)브레인커머스(잡플래닛)

- (논의안건)

- 1)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
- 2) 구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직업정보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

**< 세부 진행계획 >**

| 시간(60분) |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6:30   | (5)  | ■ 참석자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:35   | (15) | 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인광고 및 피해사례 공유<br>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설명 |
| 16:50   | (15) | ■ 기업 우수사례 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:05   | (15) | 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계자 의견 청취(건의사항 등) 및 자유 토론                     |
| 17:20   | (5)  | ■ 마무리 말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기업 우수사례 발표까지 공개